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부경신항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2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변상 : 2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영업점장 특인대출 부실 발생

- 1급 이○○은 차주 권○○에게 영업점장 특인으로 가계일반자금대출 6,000천원을 취급하면서 영업점장 검토의견서에는 차주는 식당일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차주의 남편은 어업인으로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차주는 식당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이자가 납입되지 않고 부실이 되어 조합에 6,000천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침.
- 1급 태○○는 차주 김○○과 차주 우○○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각 10,000천원, 총 20,000천원을 영업점장 특인대출로 취급하면서 영업점장 검토의견서에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동 대출은 모두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연체되어 부실 발생으로 총 18,332천원의 손실을 초래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4장 제20조(영업점장 특인대출)

1. 조합명 : 부경신항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2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2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수산물 판매업자 우대대출 취급 소홀

- 2급 김○○ 외 1명은 차주 김○○에게 수산물 판매업자 우대대출 20,000천원을 취급하였으나 대출취급 당시 김○○은 4개의 금융기관에서 7,700천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어 신용여신 취급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4장 제20조(영업점장 특인대출)

1. 조합명 : 부경신항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2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1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내부통제 업무 소홀

- 2급 고○○은 본인이 직접 시재점검을 하지 않고 부지점장에게 월 2회 시재점검을 시키고 확인만 하는 등 실제로 시재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증서도 직접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인에게 부여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책상위에 기재하여 타 직원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등 책임자키 관리를 소홀히 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출납업무방법」 제19조(현금검사)
2.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 제1편 제40조(점검 및 관리), 150조(창구책임자 준수사항)
3. 「전산정보업무준칙」 제24조(사용자 관리)

1. 조합명 : 부경신항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2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3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기업신용대출 취급 소홀

- 1급 김○○ 외 2명은 2022. 4. 7. (주)○○씨푸드빌에 기업운전자금으로 25,000천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주)○○씨푸드빌은 총자산이 578백만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기업 신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신용등급 6등급으로 신용대출은 취급할 수 있으나 시스템 산출한도인 4,334천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25,000천원 신용대출을 취급하여 20,666천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3편 제17조(신용평가의 구분), 제20조(신용등급의 분류 및 정의), 제25조(신용등급별 여신지원기준)